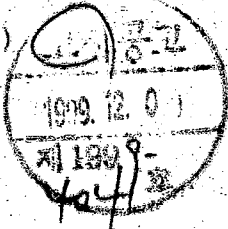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3707-8233~4 / 전송 3707-8249
 처리부서 : 주택재개발과(별관 2동 2층) 과장 배경동 담당사무관 이광식 담당 순경철

문서번호 주제58531-3567
 시행일자 1999. 12. 9. ()
 공개여부 (공개)
 (결 유) (제 1 안)
 수신 내부절제
 합 조



보존기간	년	시		장		
공개여부	공개	영 10				
부시	장					
국	장				전	결
과	장				이	광
기안자	순경철	담당사무관	이광식	합조		
심사자		심사일	1999. 12.			

제 목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

1. 구로 도게58533-2888호(99.6.10), 도게58531-4624호(99.9.6), 도게58531-4625호(99.9.6) 및 도게58530-5044호(99.9.21)와 관련입니다.

2.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구로구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와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에 대하여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입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입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되,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내 20년이하의 건물들은 존치함을 조건으로 지구지정 하고자 합니다.

가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조서

지구명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가리봉2동제1지구	구로구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	9,127	신규지정
구로6동제1지구	구로구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	2,879	신규지정

- 첨 부 1. 고시(안) 1부,
 2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도서 1부,
 3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1부, 끝.



(제 2 안)

수 신 행정자치부장관

참 조 법무담당관

제 목 관보게제 의뢰

1. 우리시 구로구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보게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제구분 : 고 시

나. 개제건명 :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고시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저소특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

첨 부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전결 주택국장 양갑

(제 3 안)

수 신 건설교통부장관

참 조 주거환경과장

제 목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고시 보고

1. 우리시 구로구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와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에 대하여, 도시저소특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저소특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 규정에 따라 고시하였기에 보고합니다.

첨 부 1. 고시문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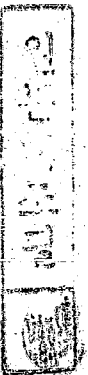
2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도서 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전결 주택국장 양갑

(제 4 안)

수 신 구로구청장



참 조 도시개발과장

제 목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고시 통보

1. 구로 도개58533-2888호(99.6.10), 도개58531-4624호(99.9.6), 도개58531-4625호(99.9.6) 및 도개58530-5044호(99.9.21)와 관련입니다.

2. 귀구 관내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와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에 대하여, 도시최소특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입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최소특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입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통보하니,

3. 관계도서를 해당부서와 통사부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처리 및 귀구의 지구지정 신청도서상의 기재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되,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내 20년이하의 건립물은 존치합을 조건으로 지구지정하나 별첨의 관련부서의 협의사항과 함께 향후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시 반영토록 조치하기 바랍.

첨 부 1. 고시문 1부.

2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도서 1부.

3. 가리봉2동1(도시계획과, 재정경제부, 서울지방국토관리청) 및 구로6동1(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, 도로계획과, 재정경제부, 서울지방국토관리청)지구 관련부서 협의회신 공문서 사본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건설 주택국장 양갑

(제 5 안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고시 통보

1. 우리시 동작구 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고시하였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1. 고시문 1부.

2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도서 1부. 끝.

주택재개발과장

수신처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, 재산관리과장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9 부나 호

제시사	1999. 12. 8	제 443 호
담당자	박성사명영사관	김주남팀장
이동부	진우	주영성

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와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에 대하여, 도시
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와 도
 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2조제4
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
 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1999년 12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가리봉2동1 및 구로6동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고시(안)

가.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결정조서

지구명	위치	면적(m ²)	비고
가리봉2동제1지구	구로구 가리봉2동 25번지 일대	9,127	신규지정
구로6동제1지구	구로구 구로6동 313-33번지 일대	2,879	신규지정

나.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도면 : 생략

※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(전화 : 3707-8233), 구로
 구 도시개발과(전화 : 860-2384) 및 관할동사무소(전화 : 859-5561, 839- 8431)
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

